

시설별 AI 표준행동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시설별 AI 표준행동요령

도축장

- 1) 도축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체, 해외여행 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 소독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2) 도축장 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체교육 실시
- 3) 도축장 소유자 및 운전자는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 GPS 정상작동 여부 점검(매일)
*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미작동)시 출입금지조치 및 관할 시·군에 통보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처벌 규정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해당 차량 운전자(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가금 운반차량 관리

- 닭 · 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 허용
-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 기록 확인
- 검사관(검사원 포함)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하고, 가금류 하차 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
- 하차 즉시 차량을 세척 · 소독(바닥 · 하체 · 바퀴 등 차량 전체)하되, 검역본부 권장 소독약으로 소독 실시

가금류 운반차량 세척 · 소독 실시 요령

-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 · 차량바퀴 등) 세척실시
- ② 세척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
-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
-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소독 또는 출입자소독기에서 소독
- ⑤ 소독실시 후 분뇨차량 운전자는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 기록 · 관리

5) 일반 출입차량 관리

-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출입 허용
-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
-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 · 소독
-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특히, 손 · 신발 소독)



어리 차량 소독



차량 내부 소독

6) 계류장 · 도축시설 주변소독

- 작업 전 · 후 계류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
- 도축부산물, 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
- 가금류 운반차량과 어리장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되 차량과 어리장에 오염된 유기물 등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며, 운전자 및 운전석 내부에 대한 소독도 반드시 실시

7)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에 따라 관리



도축시설 주변 소독



어리장 소독



계류장 소독



도암장 내부 소독

〈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

단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도축장 입차	차량	도축장 입문 시 고압분무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
	사람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 발판 소독조에 신발을 2~3초간 소독
업체·도축장 출차	차량	①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어리장을 모두 분리하여 고압세척,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분변 등 오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분무 소독 실시 ② 출고차량은 세차실 입구에 정차한 후 소독기로 운전석 및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맷힐 정도로 소독하고 어리장내 소독·세척상태 확인 ③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액의 충진상태 점검
	사람	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징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
농장 도착	차량·사람	① 농장 출입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
농장 출발	차량·사람	①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문 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실시
준수사항 (복장 등)	기타	①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 시 즉시 교환 ② 농장 내에서 기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음 ③ AI 발생지역 방역대내(위험지역·경계지역) 도축장 가축 출하 시, 운전자는 가축 방역관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

8) 오리도축장

- 다수업체의 임도축을 하는 도압장의 경우 화물차에 상차하는 어리장이 타 업체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할 것
- 오리 운반차량의 농장 충복방문 금지
 - * 농장을 충복하여 방문할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짐
- 오리운반차량은 오리농장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닭 등 오리 이외의 가금 이동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부화장

1) 부화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체, 해외여행 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 소독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2)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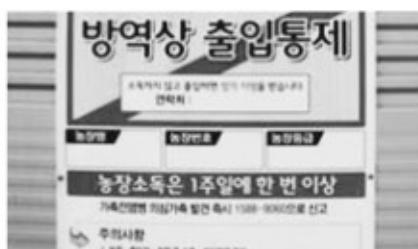
- 모든 출입자는 방문기록 유지(방문일시, 방문 목적, 방문 전 경유지, 방문 후 행선지, 연락처 등 명기)
-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 상태 유지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 유지
-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
-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 올타리 상태 점검
- 출입구, 창문, 하수구, 배수구 등에 방서 방충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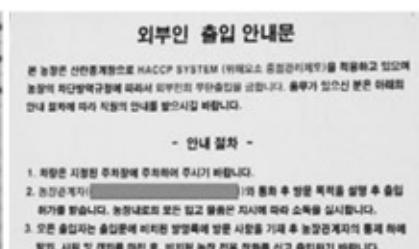
출입구 통제



차량 외부 소독



출입 통제



외부인 출입 안내문



외부인 방문 및 소독 기록



차량 내부 소독

3)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

- 부화장 내부 전용신발과 의복을 착용하여 외부로부터의 교차오염 방지
- 차량 및 발판 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
-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3일 마다 교환하고 소독조 내 오물 수시 제거
-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외부 세척 소독 철저
-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설치
- 난좌, 발육기,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
- 종사자 외출 및 귀가 시 손발세척
- 일회용 난좌 사용 권장
- 발육실, 발육기, 발생실, 발생기, 초생추 작업실, 부화실의 복도와 통로의 소독은 정해진 절차대로 철저히 이행해야 함.
- 발생실 주변에 쌓이는 병아리 털은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제거하고 소독 실시



손 소독



전용신발 교체



위생복 착용



환복



중간소독



중간실 내부 소독

4) 종란관리

- 종란 운송차량이 하역장소에 도착하면 종란실 근무자가 종란을 종란실로 모두 옮길 때까지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하차 금지
- 난좌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고, 부득이 재활용 난좌를 사용할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며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
- 종오리 농장에서 종란을 수거할 경우 산란율이 저하된 농장의 종란은 수거하지 말 것
- 부화기 입란 전,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종란은 입란하지 않도록 하여 부화기 오염 방지



종란 훈증소독



종란실 내부 소독 및 청결상태 유지

5) 병아리 분양 관리

- 일회용 종이박스를 사용하고 농장에서 수거하여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플라스틱박스를 사용할 경우 분양 전에 철저히 소독 · 건조 하여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할 것
- *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우 분양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음
- 운반 트럭에 대하여 운반 전 후로 소독 실시
- 부화장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하루에 1회 이상 소독 실시

6)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 준수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
-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 · 피부 접촉 금지
- 포르말린제제는 사람 · 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